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 폐수 배출업소 간이조사표 (자동차 세차업만 해당)



승인번호  
제 106005 호

### 1. 조사제목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 2. 조사목적

- (1) 전국 공공수역영향권의 물 환경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오염원 항목별 및 수질영향권역별 점·비점 오염물질부하량 산정 등
- (2) 수질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 중요자료로 활용  
오염물질부하량 발생·배출현황, 장래전망 및 분석 등에 다각도로 활용
- (3) 전국의 수질보전을 위한 오염원 통계자료 제공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통계, 가축분뇨 처리통계, OECD 통계자료, e-나라지표 등 활용
- (4) 행정기관 기초자료 활용 강화 및 오염원 조사 자료 대국민 공개

### 3. 법적근거

- (1) 물환경보전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31조, 동법 시행규칙 제 32조  
환경부장관은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  
시·도지사는 매년 관할구역의 오염원 종류,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조사  
그 밖에 오염원 등에 대한 조사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함
- (2) 물환경보전법 제68조  
환경부장관은 오염원 조사를 위해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지시
- (3)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042호)  
시·도지사는 점, 비점 구분하여 단위유역별·소유역별·행정구역별로 오염원을 조사
- (4)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제853호)  
유역별 오염원 조사 등을 실시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

### 4. 승인번호

'산업폐수의 발생과 처리' 승인통계 보고서 발간(승인번호 제106005호)

### 5. 협조 요청사항

이 조사는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 훈령 제1042호)」 「유역관리업무지침(환경부 훈령 제853호)」에 의하여 실시되며, 모든 국민은 성실히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허가·신고를 득한 1~5종 사업장(조사 대상기간 가동업소 대상)  
- 1~4종 폐수배출업소는 웹 시스템에서 직접 입력  
- 5종 폐수배출업소는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기관에 제출하면 시·도, 시·군·구 등에서 웹 시스템에 입력  
(5종 폐수배출업소 담당자는 웹 시스템에 직접입력 가능)

### 6. 비밀보호 정책

조사 응답 내용과 개인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며, 통계법 제32조(통계 응답자의 성실 응답 의무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조사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업종이 '자동차 세차업' 인 경우 간소화 조사표로 작성 가능(주유소·셀프세차·손세차 등, 세륜세차시설은 제외)

사업자 구분		개인	법인	
1 일반 사항	(1)관할기관			
	(2)휴업			
	(3)사업자등록번호			
	(4)업소명			
	(5) 사업장 소재지	①시도		
		②시군구		
		③읍면동		
		④리		
		⑤번지(본번, 부번)		
		⑥전화		
⑦우편번호				
(6)허가(신고)사항				
(7)사업장규모				
(8)종업원수				
(9)연간조업일수		(일)		
(10)일평균조업시간		(시간)		

업소명:

2 용수 사용 및 폐수 발생 처리 현황	(11) 세차형태(선택)	손세차	셀프세차	자동차세차
	(12)세차대수			
(13)용수사용현황	상수도(m <sup>3</sup> /일)		지하수(m <sup>3</sup> /일)	제이용수(m <sup>3</sup> /일)
(14)연계시설명	공공하수처리시설명			
	공공폐수처리시설명			
	공동처리장명			
	위탁업소(침전폐수)			
(15)직접방류		○ ( ), X ( )		
(16)전량제이용		○ ( ), X ( )		
(17)폐수배출량				
(18)폐수시설수				
(19)처리용량				

		항 목	처 리 전	처 리 후
3 폐 수 오 염 도	(20) 기 타 오 염 물 질 처 리 전 · 후 농 도	①수온		
		②색도		
		③pH		
		④BOD	mg/ℓ	mg/ℓ
		⑤COD	mg/ℓ	mg/ℓ
		⑥TOC	mg/ℓ	mg/ℓ
		⑦SS	mg/ℓ	mg/ℓ
		⑧생태독성(TU)		
		⑨n핵산광유류(n-H)	mg/ℓ	mg/ℓ
		⑩n핵산유지류(n-H)	mg/ℓ	mg/ℓ
		⑪크롬(Cr)	mg/ℓ	mg/ℓ
		⑫아연(Zn)	mg/ℓ	mg/ℓ
		⑬니켈(Ni)	mg/ℓ	mg/ℓ
		⑭망간(Mn)	mg/ℓ	mg/ℓ
		⑮불소(F)	mg/ℓ	mg/ℓ
		⑯철(Fe)	mg/ℓ	mg/ℓ
		⑰바륨(Ba)	mg/ℓ	mg/ℓ
		⑱계면활성제(ABS)	mg/ℓ	mg/ℓ
		⑲총인(T-P)	mg/ℓ	mg/ℓ
		⑳총질소(T-N)	mg/ℓ	mg/ℓ
		㉑페놀류	mg/ℓ	mg/ℓ
		㉒톨루엔	mg/ℓ	mg/ℓ
		㉓자일렌	mg/ℓ	mg/ℓ
		㉔페클로레이트	mg/ℓ	mg/ℓ

##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작성요령(자동차 세차업만 해당)

【본 양식은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로서, 조사표 작성 제출 대상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4조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신고,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업장으로써 2025년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 기간에 허가나 신고사항이 유효한사업장임】

### 1. 사업장에 관한 일반현황

- (1) 관할기관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시군구, 경제자유구역청을 기재 (사업자가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 및 신고를 한 행정관청)
- (2) 휴업 : 조사대상 기간(1년간) 동안 휴업이었던 사업장은 "휴업"으로 작성
- (3) 사업자등록번호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에 표시된 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 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서는 아니 됨
- (4) 업소명 :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체 명칭을 기재(약칭사용 금지)
- (5) 사업장 소재지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에 표시된 사업장 소재지(주소) 기재, 여러 지번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대표 지번을 기재

- (6) 허가(신고) 사항 : 신고허가증 상의 "허가", "신고", "허가 및 신고"중 선택하여 작성  
※ "허가 및 신고"는 폐수배출시설설치 허가와 신고를 같이 한 사업장
- (7) 사업장규모(종별)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증에 기재된 규모(1종, 2종, 3종, 4종, 5종)를 작성
- (8) 종업원수 : 조사연도의 정규직, 일용직, 파견근무자를 포함한 전체평균 인원수를 기재
- (9) 연간조업일수 : 조사기간 동안 사업장의 실제 가동 일수를 작성(연간 공장가동일수)
- (10) 일평균조업시간 : 방지시설운영일지 등을 참조하여 일평균 폐수배출시설(일일평균 공장가동시간) 가동시간을 작성
- (11) 세차형태 : 손세차, 셀프세차, 장동세차 등의 세차 방식
- (12) 세차대수 : 일평균 세차대수
- (13) 용수사용현황 : 세차에 이용하는 용수를 구분하여 작성(상수도, 지하수, 재이용수 등)
- (14) 연계시설명 : 종말처리장명, 공동처리장명, 집수조 침전폐수 처리하는 위탁처리시설명 등을 작성  
※ 직접방류인 경우 미기재
- (15) 직접방류 : 발생된 폐수를 직접방류 여부 선택( 폐수를 직접방류하는 경우 예 : ○( √ ), X( ) )
- (16) 전량 재이용 : 발생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선택(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 예 : ○( √ ), X( ) )  
※ (15) 직접방류, (16)전량 재이용 중 하나만 작성

- (17) 폐수배출량 : 운영일지에 일평균 방류되는 처리수량을 기재(예 : 전량재이용 = 0)
- (18) 배출시설수 : 허가 및 신고필증의 자동차 세차시설 개수
- (19) 처리용량 : 허가 및 신고필증의 방지시설용량 기재
- (20) 기타오염물질 처리 전·후 농도 : 세차시설의 기타오염물질을 측정 한 경우 해당 항목 값 작성  
※ 기타오염물질(BOD, TOC, SS, T-P, T-N)을 측정하지 않은 경우 세차시설의 발생 원단위 및 방류 원단위 적용

※ 작성 문의사항은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 콜센터(032-560-7377), 전국오염원조사 홈페이지(wems.nier.go.kr)